

# 2016년도 드림스타트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팀	국 가	뉴질랜드 · 호주
	기 간	2016.6.12(일) ~ 6.19(일)
2팀	국 가	덴마크 · 핀란드
	기 간	2016.6.19.(일) ~ 6.26(일)



# 국외연수(1팀) 결과보고

연수국가	뉴질랜드 · 호주
연수기간	2016.6.12(일) ~ 6.19(일)
연수인원	총 20인

# 【 목 차 】

I . 국외연수(1팀) 출장개요 .....	1
II . 국외연수(1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	4
III . 국외연수(1팀) 방문기관 결과보고.....	21
IV . 총 평.....	51
V . 시사점.....	53

# 국외연수(1팀) 출장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호주 및 뉴질랜드의 아동복지 정책, 현황,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협력관계 등 선진 외국의 아동복지 현장견학을 통해 국내 아동보호를 포함한 아동복지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
- 드림스타트 사업의 모델인 뉴질랜드 Family Start 사업의 개요, 운영현황,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수준 등을 추진체계, 자원, 자원체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모색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소진 예방

## □ 연수 개요

### ○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

【표 1】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1팀)

구분	국가(도시)	기 간	기 관
1팀	뉴질랜드 (오클랜드)	6.12(일) ~ 6.19(일) (6박 8일)	Anglican Trust for Women and Children(ATWC) 외 2개 기관 방문
	호주 (시드니)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외 2개 기관 방문

○ (연수참가자) 총 20인(보건복지부 2인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인 / 시·군·구 16인)

【표 2】 연수 참가자 명단(1팀)

구분	성명	성별	소속	직위(급)
1	김희봉	남	보건복지부	사무관
2	이순영	여	보건복지부	주무관
3	임지영	여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원
4	김윤미	여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원
5	정은숙	여	서울 성동구	팀장(사회복지6급)
6	김보경	여	서울 구로구	팀장(사회복지6급)
7	김갑선	여	부산 수영구	팀장
8	하지은	여	대구 남구	지방사회복지서기
9	권은주	여	대구 수성구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0	강경희	여	인천 연수구	지방행정주사
11	이동근	남	광주 광산구	지방사회복지주사
12	김귀례	여	광주 서구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3	노현주	여	경기 오산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4	이주원	여	경기 의왕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5	이봉득	남	경기 의정부시	지방행정주사
16	배점호	남	경기 평택시	팀장(행정6급)
17	남달리	여	강원 강릉시	지방간호서기(간호8급)
18	이순명	여	충북 제천시	지방보건주사
19	원춘옥	여	전남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
20	지미정	여	경남 거제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연수내용) 선진국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부·민간 기관방문

- 방문시간 : 기관별 2~4시간

- 주요내용

- 아동복지(공공부조 포함) 일반 현황 및 전달체계(조직) 현황, 전달체계(조직) 현황 및 아동·사회복지 정책의 비교 분석
- 아동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 대상아동 발굴시스템 및 사례관리 체계 등

○ (주요일정)

【표 3】 연수 주요일정(1팀)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6.12(일)	(한국)인천	인천국제공항 → 시드니 국제공항
2일차	6.13(월)	(뉴질랜드)오클랜드	시드니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
3일차	6.14(화)	(뉴질랜드)오클랜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Family&Community Services 사회개발부 가족&사회복지서비스국
			Family Start - Anglican Trust for Women and Children (ATWC) 패밀리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는 자선단체
4일차	6.15(수)	(호주)시드니	Children's Action Plan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부서
			오클랜드 국제공항 → 시드니 국제공항
5일차	6.16(목)	(호주)시드니	Barnardos Auburn Children's Family Centre 호주에서 최초로 설립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비영리단체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DoCS) NSW주 가족사회복지부
6일차	6.17(금)	(호주)시드니	Strathfield City Council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현장견학) Kindergarten in Sydney
8일차	6.19(일)	(한국)인천	시드니 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도착

※ 방문기관의 갑작스런 일정 조정 요청, 일정 취소 등 현지 상황에 따라 국외연수 기존 계획과 상이

# 국외연수(1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

## □ 호주\_Best Start

### ○ 추진배경 및 목적

- ‘아동이 먼저(Children First)’ 라는 호주 빅토리아 주지사의 정치적 선언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
- 이때부터 초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조기개입의 중요성 강조
- 아동 및 가족 지원, 보건서비스,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부모,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모든 아동 및 가족 욕구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0세(임산부 포함)~만8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젝트로, 법무부(법무예방부서), 체육관광연방게임부(Commonwealth Game), 빅토리아 경찰과 사회서비스기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혁신산업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행정자치부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협력
- (재정체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동적 후원으로 진행

### ○ 주요내용

- (서비스 전달원칙)
  - 지역 욕구 충족을 위해 기획-계획-평가 과정을 거친 연계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를 지원

- 아동의 안녕(wellbeing) 증진을 위해 가족에게 지역자원 연계 및 학교 네트워크·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아동과 가족 욕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아동의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 조부모, 주양육자 등 다른 보호자들과의 관계 구축
  - 돌봄과 지지의 연속선상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2차, 3차 서비스 조정
  - 우수하게 평가된 프로그램의 공유
  - 서비스 계획, 개입 등의 제반 과정을 평가
-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사업으로 기획되며, 지역별 Best Start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 지역 파트너십은 Best Start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 파트너십 구성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주양육자 대표,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자,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관련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집단으로 구성
  - 아동양육, 유아기 서비스 개입, 지역 중심 서비스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많은 이점을 창출
  - 부모, 지방정부,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집단(체육 및 여가 관련 모임, 옹호집단 등) 6개의 필수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



【표 4】핵심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양질의 산전관리	• 부모교육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임신 관리를 촉진시키는 능력이나 기술 강화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 및 지원	• 자녀 양육, 학습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능력이나 기술을 강화 • 부모가 읽기, 쓰거나 수 계산법 관련 교육 지원
조기학습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 성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할 때 특별한 욕구에 초점을 두어 유아 및 가족 지원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초반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취학 후 3년동안 아동에게 양질의 학습 및 보호제공	-
아동 및 부모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 영유아와 부모 모두의 건강관리(건강정보, 모유수유, 영양, 예방주사, 건강진단 등) 실시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허브역할 부여	•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사회 내 허브로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학교의 중요한 역할 인지 및 지원 • 필요 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 아동을 최대한 원 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족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 지향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를 영유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실시
적절한 주택공급장려	• 주택 영역에서 공적 프로그램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실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프로그램 등 시행

## ○ 사업성과

- (성과관리체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성과와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증진시키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13개 지역에 걸쳐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Best Start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지역특성을 개발하여 반영하되 3가지 영역<sup>1)</sup>에서 평가

- 주(州) 전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평가 프로파일, VicHealth 파트너십 분석 도구, 서비스 협력관계 도구, 아동 및 부모에 대한 포괄적 검사, 다양한 가족 전략, 조정자와의 인터뷰, 해당 지역방문 등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 활용
  - 대부분의 평가지표는 장·단기에 걸쳐 측정되며 평가 결과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해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
- (사업효과) 모유 수유 및 모자 건강서비스 참여율, 문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독서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 창출 및 부모의 참여 증대

---

1) 3가지 영역 : 건강과 안녕(health and wellbeing),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 안전(Safety)

## □ 호주\_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

### ○ 호주 아동보호체계

#### - (추진배경)

-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강조함에 따라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안 또한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닌 아동의 안전 및 가족복지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접근
- 학대행동, 방임행동 등 ‘행동(behaviours)’ 이라는 용어 포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정의함에 따라 정부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970년대 이후 아동을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족 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

#### - (관련 법률)

- 각 주와 관할 행정구역별 아동보호 관련 법률 입법화 및 정책·서비스에 대한 책임 행사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Queensland의 Child Protection Act 1999, New South Wales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8 등 호주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 - (담당부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Families, Older Australians and Service Information

#### - (추진체계)

-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에서 주로 전담하며, 민간 기관에서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을 담당
- 모든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위기(at-risk)상황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출처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2009). p.8

【그림1】 호주 아동보호체계

- (추진절차)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나면 지방정부(state, territory)는 보호명령(Care and Protection Order)을 법원에 청구, 대리양육(guardianship and custody orders), 위탁보호(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arrangements), 지도감독(supervision), 일시보호(interim and temporary orders) 등의 절차에 따라 개입

- 지방정부의 경우,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를 근거로 권한(Statutory power)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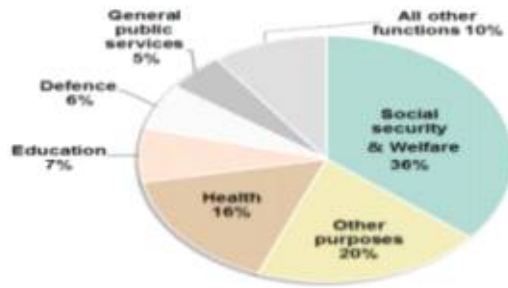
- (수혜아동 현황) 2013-2014년 1년 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총304,097건) 중 143,023명의 아동에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 출처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15). p.9

【그림2】 호주 2013-2014년 아동보호서비스 수혜아동 현황

- (예산현황) 사회보장 및 복지(Social security & welfare)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6%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출처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15). p.14

【그림3】 호주 2015-2016년 아동보호 예산

- (주요내용)

① 집중서비스(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와 가정 외 보호

-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보호의 의미보다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집중서비스 제공
- 가정 외 보호(OOHC, Out-of-Home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친인척 위탁 및 가정위탁(Family group homes), 가정기반보호(Home-based care), 자립(Independent living) 등으로 구분
- 각 지방정부는 아동학대 위험요소 평가도구(consensus-based and actua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s)를 활용

② 부모교육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me, Tripple P)

- 호주에서 시작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ripple P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창출 및 타국가에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으로 시행 중
- 지역사회 기반으로 부모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
- 안전한 환경만들기(Safe and engaging environment), 긍정적으로 반응하기(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체벌대신 규칙정하기(Assertive discipline), 현실적인 기대치 정하기(Realistic expectations), 스스로를 돌보기(Parental self-care)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 포함

### ③ 정보공유 지침

-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침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 진입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 공유<sup>2)</sup>
- 아동 및 가족의 사생활,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 중시함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자(Child Protective Worker)는 등록된 민간 단체, 의료인(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학교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authorized professionals employed by service agencies)와 정보 공유
- 경찰을 포함한 관련기관(person in charge of a disability service, person in charge of a parenting assessment and skill development service 등)과도 정보 공유

### ④ Signs of Safety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정비를 위한 6년 간의 Western Australia(WA) 지역 장기계획
-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아동보호 담당자와 가족, 학대피해아동·청소년, 민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해결중심’ 실천모델
  - ▶ 우리는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무엇을 걱정하는가?  
(what are we worried about in how parents are caring for their children?)
  - ▶ 무엇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what is working well?)
  - ▶ 최근 아동의 안전은 어떤 상태라 판단되는가?  
(a judgement around the current safety of children)
  - ▶ 앞으로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what needs to happen to ensure future safety?)

2) Victoria 지역의 경우, ‘The Childrenm Youth ans Families Act’에서 명시한 전문가는 아동보호와 가족복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2005)

##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 ① 가족지원제도

-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A&B)

#### • 가족세제급여 A형

- ▶ 만16세 이하의 부양아동, 만16세~24세의 학생,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 지급
- ▶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소득 이하 가구대상 지급
- ▶ 소득조사에 근거하여 자녀 수, 자녀연령에 따라 다르며 보호시설 입소 아동에게도 지급
- ▶ Family Assistance Office(FAO)나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급여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하며, 급여수급과 관련한 소득변화 신고 필요

【표 5】 가족세제급여 A형의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2주	연간
자녀 1인당 기본 지급액	만18세 미만	52.64	2,098.75
	만18세 ~24세	70.56	2,565.95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만13세 미만	164.64	5,018.75
	만13세 ~ 15세	214.06	6,307.20
	만16세 ~ 17세	52.64	2,098.75
	만18세 ~ 24세	70.56	2,565.95
	인가된 보호시설의 경우(0~24years)	52.64	1,372.40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 가족세제급여 B형

- ▶ 한부모 가정, 가족 수입원이 한 명 또는 부부 모두 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
- ▶ 만5세 미만 자녀, 만18세 이하의 전업학생으로 거주요건 및 일정소득 미만 대상에게 지급

- ▶ 그 밖에도 가족세제보충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를 지급하여 정상적인 소득신고 장려

【표 6】가족세제급여 B형의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2주	연간
만5세 미만	140	4,004.05
만5세 ~ 18세	93.58	2,898.10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

- 한부모 가정과 양육책임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 한부모 가정 중 만8세 이하의 아동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정 중 만6세 이하의 아동 양육 시 급여 지급
- 소득 및 자산조사, 구직활동 수행 시 지급하며 한부모의 경우 최연소 자녀가 만7세가 되는 시점부터 시간제 근로(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 시 지급

-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 출산 또는 만16세 미만의 아동 입양 시 제공되는 육아지원비
- 출산, 입양 3개월 전 가족지원사무소로 베이비보너스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입양 후, 52주 내에 신청

※ 베이비보너스는 유급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과 동시 지급 불가 단,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자녀는 베이비보너스, 다른 자녀는 유급휴가수당 지급 가능

② 보육지원제도

-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 아동보육은 인가된 시설(Approved Child Care)에서의 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 (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된 제공하는 보육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보육급여를 지원하며,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혹은 직업교육 수행, 장애, 간병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50시간까지 지원

- 부모가 모두 학업 및 근로로 인해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50시간 이상 서비스 지원

【표 7】 아동보육급여 기준 및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지원기준	최대 급여액
시설보육 (Approved Care)	• 소득조사 통해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1인) 주당 189.00, 시간당 3.78</li> <li>• (아동 2인) 주당 395.00, 시간당 3.95</li> <li>• (3인 이상) 주당 616.42, 시간당 4.10</li> <li>1명 추가 시 616.42+205.47</li> </ul>
등록보육 (Registered Care)	• 부모가 근로 또는 직업교육, 학업 중일 경우, 소득조사 없이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아동) 시간당 0.632 주당 50시간, 최대 31.60까지 가능</li> <li>• (취학아동) 미취학 아동 급여의 85%</li> </ul>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보육조세환급제도(Child Care Rebate: CCR)

- 소득이 높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부모가 모두 근로활동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보육료의 최대 50%를 환급,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 뉴질랜드\_Family Start

### ○ 추진배경

- 1990년대 초반, 자원부족, 외적 제약, 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 등 다양한 빈곤 세습 원인으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을 인지함에 따라 조기 아동개입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
-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의 유기적 연계와 원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 추진목적

- 가족지원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동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증진
  - 부모의 역량 개선
  - 아동 및 부모의 환경 개선

### ○ 추진경과

- (1998년) 뉴질랜드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1999~2000년) 추가로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지역의 욕구 및 특성, 문화에 맞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05~2007년) 프로그램의 향상과 시행지역의 두 번째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로 2007년 말 이후 30개 지역에서 실시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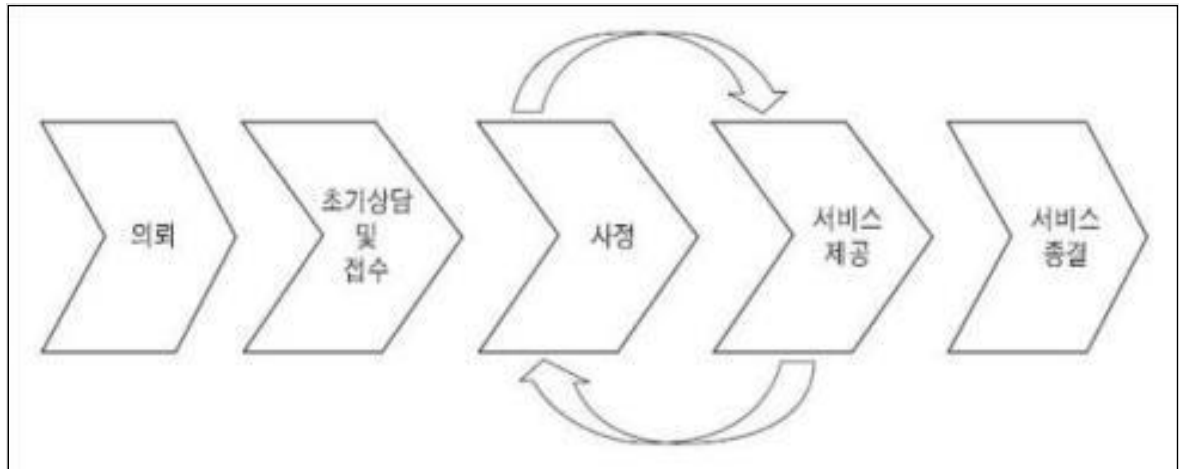
- (추진체계) '가족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개발부(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사회개발부 내 아동청소년 가족실(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CYF)의 4개 부처가 지원
- (사업대상) 빈곤에 처한 위험집단(국민의 15%) 중 고위험집단군(5%)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를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아동이 태어나기 전 3개월부터 탄생 후 1년까지이며, 자발적 참여에 의해 최대 5년까지 제공
- 서비스 제공 시간은 첫째 고위험가족 240시간, 중위험가족 150시간, 저위험가족 60시간이며, 다음해부터 시간 감소

○ 사업내용

- (제공체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의뢰, 초기상담 및 접수, 사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 절차로 서비스 제공



【그림4】 Family Start 서비스 제공흐름

① 의뢰(Referral)

- 주요 의뢰기관은 Lead 모성보호기관 (LMCs), Well Child, Tamariki Ora 제공 기관 등이며 의뢰 시, 의뢰기준 양식을 사용

② 초기상담 및 접수(Initial Contact and Acceptance)

-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에게 가족 의뢰
- 접수 후 24시간 이내 가정방문 및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 적절성 확인
- 초기 접수 후, 몇 달은 매주 가정방문 진행

- 매달 고위험 가족 4회, 중위험 가족 3회, 저위험 가족 1회 가정방문 실시
- Family Start 의뢰기준(Family Start Referral Criteria)을 통해 서비스 수혜 여부 결정

### ③ 사정(Assessment)

- 가족의 강점 및 욕구사정(Strengths and Needs Assessment)은 서비스 제공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비공식적 과정(가족복지사의 관찰 및 인지)과 공식적 과정(사정기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진행
- 가족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사정은 개별가족계획(IFP: Individualized Family Plan)의 핵심적 기초로 활용
- 초기 사정은 첫 가정방문 후 6주 내에 실시, 최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욕구 및 강점사정 실시

### ④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재사정을 통해 점검하고, 두 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
- 주요 서비스 내용(5가지)
  - ▶ 가정방문(Home Visits)
  - ▶ 아동 안전(Child Safety)
  - ▶ 개별가족계획(Individual Family Plans)
  - ▶ 조기교육(AM&BTL: Ahuru Mowai and Born to Learn)
  - ▶ 건강 및 교육성취 증진(Promoting health and Education Outcomes)

### ⑤ 서비스 종결(Programme Completion)

- 아동 및 가족이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독립성이 형성되면 서비스 제공의 점차적인 감소 및 종결 진행

## ○ 사업평가

- (평가목적) 서비스 제공이 끝날 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실시
  -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단기효과 평가
  -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가족에게 미친 영향 및 그에 대한 효과 확인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아동 및 가족의 욕구·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자), 가족복지사
- (평가기준)
  - 아동의 건강·교육·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
  - 부모됨(Parenting)의 역량 개선
  - 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

## ○ 사업성과

- Family Start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방식이 상이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긍정적인 편

## □ 뉴질랜드\_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

### ○ 추진배경

-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복지혜택은 주로 사회 개발부(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
  - Work and Income(WINZ) : 고용과 경제적 보조 지원
  - Child, Youth and Family(CYF) :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혜택 담당
  - Senior Services : 노인복지 담당
  - Study Link : 학생용자와 생계 지원
  -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
  - Inland Revenue Department(IRD) : 세금징수와 환급을 돕고 가족 수입에 따른 세금공제와 양육 관련 지원
  -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HNZC)저소득층 장애인, 난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서비스 제공

### ○ 주요 정책

- 20 hours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 만3-5세 아동은 하루 6시간, 최대 주 20시간의 유아교육을 무료제공
    - ※ 단, early childhood education 수당을 지원받을 시, childcare subsidy는 지원 불가
- Childcare subsidy
  -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 ※ 아동은 일주일 중 최소 3시간은 유치원 이용
    - ※ 장애수당을 받는 아동의 경우, 만6세 이하 아동 포함
  - 소득이 낮거나 중간 이하, 뉴질랜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 아동의 주 양육자
    - ※ 일 또는 학업을 진행하는 중이 아니라면 주9시간, 일·학업 또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라면 주 50시간의 수당 지급
    - ※ 단, childcare subsidy 수당을 받을 시 early childhood education는 지원 불가

- For children aged 5 to 13 (OSCAR Subsidy)

- 만 5세부터 13세(아동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최대 만18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방과 전·후의 활동에 대해 주 20시간, 방학 프로그램은 주 50시간 수당 제공

# 국외연수(1팀) 방문기관 결과보고

## 【목적】

- 선진국가의 방문기관별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진단
- 공공과 민간의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등을 탐색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 논의

## □ 방문기관 목록 (총 6개 기관)

### ○ 뉴질랜드(오클랜드)

- 1)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Family&Community Services)
- 2) Family Start - Anglican Trust for Women and Children (ATWC)
- 3) Children's Action Plan

### ○ 호주(시드니)

- 4) Barnardos Auburn Children's Family Centre
- 5) NSW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DoCS)
- 6) Strathfield City Council



## □ 방문기관 세부내용

방문기관1			
6. 14.(화)	기관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Family&Community Services)	
	소재지	Auckland Regional Office, Avanti Finance Centre, Building A, Level 1, 65 Main Highway, Ellerslie, Auckland	
	연락처	+ 64 (09) 917 7758	홈페이지 <a href="http://www.familyservices.govt.nz">http://www.familyservices.govt.nz</a>

### ■ 운영 개요

- (목표)
  -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과 역량개선
  - 아동과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
- (추진배경)
  - 1990년대 초반부터 조기아동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지
  - 아동의 5%가 빈곤이 세습되며 빈곤세습 원인으로 자원의 부족, 외적인 제약, 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 등으로 악순환 고리 형성
  - 1998년 가족기능 강화 및 빈곤의 악순환 단절을 위해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연혁)
  - 1998년 : 뉴질랜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1999년 ~ 2000년 :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 2016년 : 현재 32개 지역 실시(오클랜드 내 5개 지부)
- (재정구조) 100% 정부 펀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

##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아동 및 가족
- 0세(임산부)~만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만5세 이상 아동은 종결

#### 【 Family Start 대상자 선정기준 】

- |                 |                  |                    |
|-----------------|------------------|--------------------|
|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가정 | ▶이동학대 경험이 있는 가정  |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 |
| ▶알콜 중독자가 있는 가정  |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     | ▶미성년자 부모 가정        |
| ▶도박 중독자가 있는 가정  |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 |                    |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시, 대상자로 선정

### - (운영방법) 자원봉사자, 프로바이더, Family/whanau worker 등의 수행인력을

- 통해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한 가정당 프로그램 비용 5백만원 정도 지원)
-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한 초기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Family/whanau worker에게 전달
  - Family/whanau worker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 양육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1인당 16인 아동을 관리하며, 주1회 방문상담일지 작성
  - 필요에 따라 타기관에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슈퍼바이저 승인 진행(Family Start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연계 수행)
  - 매주 가정방문을 진행하며, 건강상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여부 등 점검, 가족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등 실시

## ■ 질의응답

### Q1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 ▶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열의를 갖고 아동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차량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아이가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 Q2 종결되는 아동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가?

- ▶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이 필요로 하는 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관리하고 있다.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Q3 선정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아동은 어떻게 관리하며, 일반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 선정기준 중 1~2개만 해당하는 경우, 프로바이더가 판단하여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문제만 갖고 있는 가정은 하우스징뉴질랜드라는 기관과 연결해준다.

### Q4 프로바이더가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얻을 때 절차적인 어려움은 없는가?

- ▶ 대부분 프로바이더 요청 시 슈퍼바이저가 승인을 해준다. 프로바이더가 충분히 고민하여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얻을 때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을 타기관으로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바이더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 **Q5** 패밀리스타트 관리가 필요한데 거부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관리가 필요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아동 및 가정에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안내하면 프로그램 참여를 받아들인다. 또한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고 설득하면 받아들인다.

## **Q6** 패밀리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가정의 개인정보를 함께 하는 4개 기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가?

- ▶ 타 기관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패밀리스타트 관련 부서에서만 전산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

## **Q7** 패밀리워커로 일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1명의 패밀리워커가 몇 가정을 관리하는가?

- ▶ 300명 정도의 패밀리워커가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있다. 아직 많은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지만 패밀리워커 1인당 1년에 16가정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 **■ 시사점**

- Family Start와 드림스타트는 유사점이 있으나 만2세 이하의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5세까지만 관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영유아기에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는 아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Family Start는 아동 중심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가족 중심의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을 지원함에 따라 가족 역량 강화,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문제 해결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 Family Start는 중앙 정부에서 NGO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NGO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드림스타트와 차이가 있으며, NGO 단체 활동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방문 시, 방문자에게 방문증을 교부하는 등 기관보안이 철저하다. 또한, 기관설명에 앞서 안전교육 및 비상 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인상적이었다.

## ■ 현장사진



방문기관2			
6. 14.(화)	기관명	Anglican Trust for Women and Children(ATWC)	
	소재지	10 Beatty st, Otahuhu, 1062, Auckland, New Zealand.	
	연락처	+ 64 (09) 276 3729	홈페이지 http://www.atwc.org.nz

## ■ 운영 개요

### - (목표)

-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 가족지원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동 삶의 질 향상
-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양육자의 역량강화
- 아동 및 부모의 환경개선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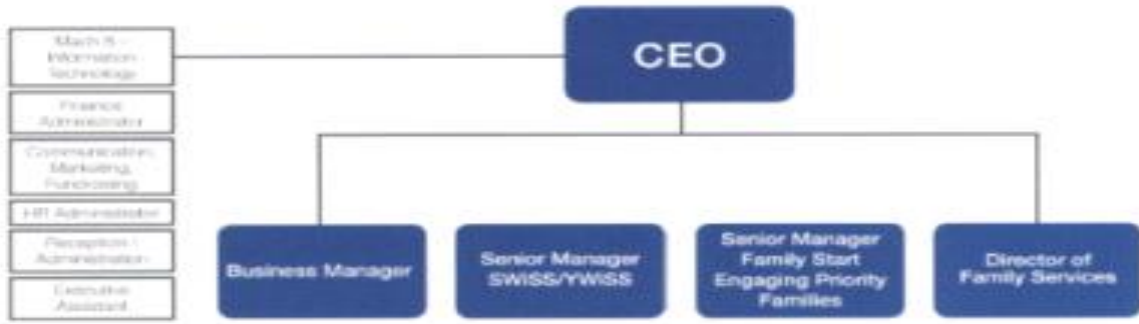
- 1990년대 초반, 자원부족, 외적 제약, 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 등 다양한 빈곤세습 원인으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을 인지함에 따라 조기 아동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지
-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의 유기적 연계와 원가족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 (추진경과)

- 1998년 : 뉴질랜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 시작
- 1999~2000년 : 추가로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하고 지역의 욕구 및 특성에 맞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05~2007년 : 프로그램의 향상과 시행지역의 두 번째 확장시기로 2007년 말 이후 30개 지역에서 실시

### - (재정구조) 후원 및 정부편당 70%, 교육청 10%, 교회자선단체(성공회) 10%, 기타 (The Rainbow op Shop(자체 운영) 및 개인 후원) 10%

### - (조직 및 인력현황) 대표 1인, 시니어 리더 4인, 매니저 14인으로 구성



【그림5】 ATWC 조직구성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임신부~미취학 아동 중 건강 및 안전에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알콜중독, 도박중독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는 경우
  - 부모와 가정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청소년 양육자인 경우
- (대상발굴방법) 경찰서, 병원, 산파(Midwife)\* 등의 의뢰를 통해 발굴
  - \* 모든 임신부에게 출산 6개월 전부터 월1회~주1회 산파가 도움을 주는 시스템과 출산 이후에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를 도와주는 플렁킷(Plunket)이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지원내용)
  -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개입
  - 초기 6주는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간의 라포 형성, 대상자 탐색 및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가정의 강점 및 욕구(필요) 등을 확인 후,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계획
  - 최소 한 달에 2번, 1시간 이상의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습, 사회 부적응 등 가족의 욕구(필요)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 질병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와 의사가 동행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각 가구의 목표가 다르며, 아동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

- (프로그램의 효과)

- 프로그램 실시 이후,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아동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 접종률 상승 및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가정폭력 및 학대 경험 가족으로부터 피드백 및 결과물 분석을 통해 위험성 하향 조정

- (기타 프로그램)

【표 8】 ATWC 기타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Family Service	Granger Grove (Residential Parenting Programme)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과 양육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3단계 과정을 거쳐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Preschools	만3세~5세 연령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놀이장면과 행동을 관찰함과 동시에 양육자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Therapy (Counselling Service)	모-아동 간의 유대감 증진과 정서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Granger Grove와 Counselling Service팀이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진행하며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Engaging Priority Families	학업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부모와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미취학아동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Social Work Service	SWiS (Social Workers in Schools)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주로 학군이 낮거나 저소득가구가 많은 취약지역의 46개 학교에 30명의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학생과 가족을 포함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복지부 지원프로그램)
	YWISS (Youth Workers in Secondary Schools)	만13세~16세 사춘기 아동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사회부적응 문제를 가진 학생과 멘토를 연계하여 학업에 자신감을 얻게 하고, 정신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 질의응답

### Q1 Family Start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가?

- ▶ Family Start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모든 기관은 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예산 및 결산 등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 Q2 한 명의 대상아동을 다른 지역의 소셜워커가 중복·개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보건부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중복개입은 없으며 타지역으로 전출가거나 전학가는 경우, 대상아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인계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Q3 Granger grove 서비스의 제한기한이 있는가? 또한,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 안전한 공간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지역사회로 돌아온 후, 자립 및 적응할 때 지역사회의 전문복지사로부터 상담, 아동심리, 치료서비스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Q4 경찰 및 병원 등과의 협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 뉴질랜드는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용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없다.

### Q5 Family Start 대상자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ATWC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 현재 3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중 90%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개입 이후 양육의 태도, 기술 습득을 통한 부모의 행동변화, 주변 환경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아동과 양육자의 위기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대상자가 나아졌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한다.

## ■ 시사점

- 임신부와 영·유아기의 건강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과 유사하다. 방문과 전화를 주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상자의 근황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예방사업임과 동시에 사후 점검 자료 공유, 개입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점이 있어 성실한 사례 관리 수행의 필요성을 느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거나 과한 의료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대상아동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복지정책 과제로 사료된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뉴질랜드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정책 과제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입 시 한 기관에서 모와 아동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 양육자 및 아동 심리치료, 양육지식 및 기술 습득, 아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관보호 종료 후, 가족 및 아동이 국가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아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 현장사진



방문기관3			
6. 15.(수)	기관명	Children's Action Plan	
	소재지	Po Box 1556, Wellington 6140	
	연락처	+64 (022) 344-7428	홈페이지 www.childrensactionplan.govt.nz

## ■ 운영 개요

### - (추진배경 및 특징)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 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아닌 아동 중심의 통합적 접근의 새로운 시스템(Hub)의 필요성 제기
-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ViKI) 도입
- 개별 아동에 맞춰 분산되어있던 각각의 지원에 대한 하나의 플랜 수립 및 정보 공유,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

### - (연혁) 2016년 3월부터 운영 시작

### - (역할)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지역공동체 에이전시(센터)에서 활동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Child's Action Network로서 역할 수행

- 집중적인 에이전시 지원
-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인적자원 지원
- 초기신원확인 (Vulnerable Children's Hub/Vikl/ALSA)

### - (조직 및 인력현황)

- Director 총감독
- Work force lead 사업시행리더
- Operations Support Manager 운영지원관계자
- Coordinators 코디네이터
- Administators 행정관
- Service Brokers 서비스연결자
- Lead Professionals 선임전문가

##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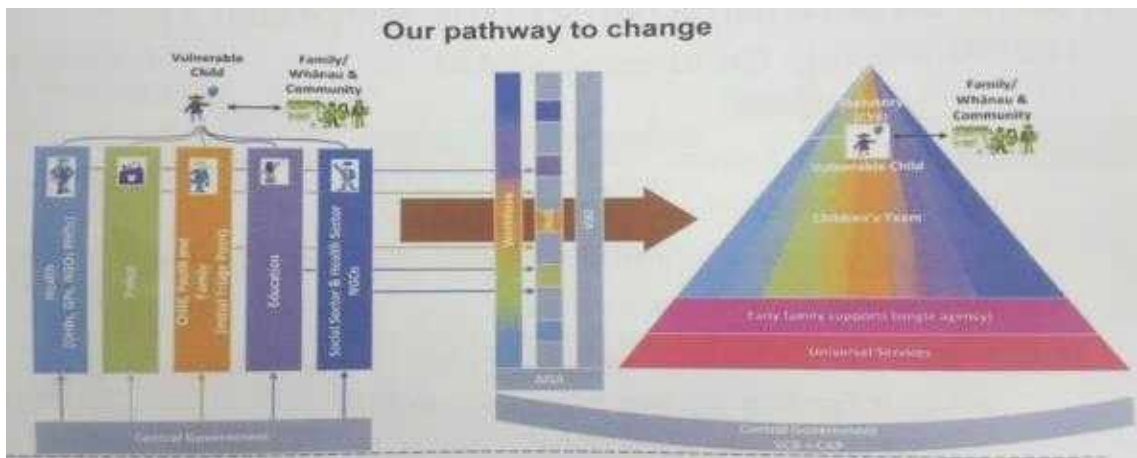
### - (지원대상)

- 지역공동체 상담을 통해 아동, 청소년, 현장근로자, NGO 단체로부터 의뢰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가족 (약 10,000건)
- 정신건강문제, 음주·약물·도박 문제, 아동학대, 부모와 가정 내의 심각한 문제,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장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 부모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 (9가지 질문 중 3개 이상이 되면 지원)

### - (지원절차)

- 1) 복잡하고 높은 위험요소를 가진 아동 발견
- 2) 전문가가 온라인 및 유선연락을 통해 HUB로 연락(향후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예정)
- 3) 성장배경, 정신적 문제, 건강상태, 아동이 속한 커뮤니티 등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
- 4) 판단에 의해 Children's Team으로 연결
- 5) 매주 2회(화, 목) 전문가 회의 실시
- 6) 아동과의 관계 형성
- 7) 통합 평가에 따른 일괄적 계획 수립
- 8) 맞춤형 서비스 연계
- 9) 정기적 점검 및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지속적인 관찰 및 기록)
- 10) 아동의 변화에 따라 계획 수정 및 종결

※ 종결된 아동의 경우, 필요 시 대상자로 재선정 및 지원 가능



【그림6】 지원 방법의 변화

- (효과) 2016년 3월에 시행하여 3월(11명), 4월(25명), 5월(58명)으로 관리아동이 점차적으로 증가 (연령별 : 태중(2), 0-만2세 (남5,여4), 만2-5세 (남9,여10), 만5-10세(남19, 여18), 만10-15세(남13, 여5), 만15세 이상(남3, 여6))

## ■ 질의응답

**Q1**

**한국에서도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One Plan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 ▶ 이전까지의 개별적 시스템으로는 아동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통합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아동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 부서만 승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Q2**

**뉴질랜드 10개 지역에 센터가 있는데 모두 오클랜드 Manukau Childer's Team처럼 운영하고 있는가?**

- ▶ 10개 지역의 센터가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현재는 3곳(오클랜드, 헤밀턴, 크라이스처리)에서만 중점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모든 지역이 이 곳의 Children's Team처럼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3**

**아동의 정보를 각자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기록한다고 했는데 모든 센터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가?**

- ▶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VIKI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다만, 매니저나 관련된 사람들은 VIKI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시사점

- 아동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아동 관련 전문가가 시간 및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질랜드 내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 및 One plan 시스템인 Children's Action Pla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hildren's Action Plan을 통해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아동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회의 진행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점차 Children's Action Plan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도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결석 아동조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one plan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다.
- 드림스타트를 통한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아동보호, 아동생활시설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 학교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돌봄, 각종 바우처 지원 등 여러 유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예산 투입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아동문제는 점차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화되고, 그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취약계층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드림스타트에서는 각 기관 내 팀원과의 사례회의 진행 및 지역 내 복잡하고 심각한 아동에 대해서만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거나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 Children's Action Plan 시스템을 드림스타트에 접목하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동 사회복지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교육청, 보건소, 경찰, 관내 복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과의 실무자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를 더욱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및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현장사진



방문기관4			
6. 16.(목)	기관명	Barnardos Auburn Children's Family Centre	
	소재지	18 Kerr Parade, Auburn NSW 2144 오스트레일리아	
	연락처	+61 2 9646 2770	홈페이지 <a href="http://www.barnardos.org.au/">http://www.barnardos.org.au/</a>

## ■ 운영 개요

- (목표) We believe i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 (추진배경)
  - Thomas Barnardos라는 의사로 인해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로 정부·종교단체 등의 정치적 영향이나 인종·국가·언어 등에 대한 차별없이 운영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Barnardos Auburn Children's Family Centre는 1974년 11월 호주에서는 첫 번째로 설립
  - Auburn 지역은 100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지역이며, 이민자와 난민 수가 많은 지역으로 시드니 서쪽 지역에 위치
  - 거주인구 중 50%가 실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역의 월세도 비싼 편으로 소득의 60% 정도를 차지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자의식 저조
  - 의무적으로 취학해야하는 시기인 만 5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 교육적·심리적인 준비를 주 목적으로 센터 설치
  - 오랜 기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모와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보다 가정 내 개입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
- (재정구조) 대부분 Barnardos사의 후원으로 구성된 재원으로 센터가 운영되며, 아주 적은 일부분은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임신 8개월~만5세 아동 중 정부와 경찰로부터 의뢰된 가정의 아동
  - ※ 만11세 이상 청소년까지 위기가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프로그램 내용)

1) Domestic Violence Support (가정폭력 지원)

-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 및 부모의 물리적 분리 및 부모의 아동 양육권 상실 가능
- 아동과 같이 살기 위해 부모는 필수적으로 재활을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재활 및 변화를 위한 도움 지원

2) Family Support & Preservation (가족회복)

- 가정폭력, 아동 돌봄 및 양육, 정신건강, 약 또는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지원
- 학교를 다녀야하는 만6세 아동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경고를 통해 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미입학 아동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 계획 수립 등 개입 및 지원 실시
- 재정관리, 부모교육, 아동양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

3) Temporary Accommodation (가족 반영구쉼터 지원)

- 아동이 있는 노숙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제공하고, 노숙의 원인 파악, 극복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노숙 가정의 아동은 학교에 미입학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입학률 높이고, 노숙 가정의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센터는 10채의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별로 최소 1년 기거 가능

4) Child & Adolescent Sexual Assault Support (심리상담)

-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경우,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족 내 개입을 통한 해결방안 추구
  - \* 가정폭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신체적 위협, 언어폭력, 성추행, 성폭력 등을 포함하며, 호주에서는 가정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강제적인 사회적 분리 또한 폭력으로 간주
-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및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
- 지역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법적인 대처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5) Youth support (청소년지원)

- Youth support는 만12세~18세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학교 및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주목적으로 아동과 부모가 화합하는 방법, 부모와의 관계 개선,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 지원

6) Temporary Family Care (가정위탁)

- 아동학대 등에 노출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안정적인 가정에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아동에 대한 일시적 가정위탁 광고를 통해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후, 위탁가정 선정 및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결정될 때까지 보호

7) Kin Care Support (가족보호 프로그램)

- 아동학대 가정으로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 수 없어서 정부차원에서 조부모, 삼촌, 숙모 등 친족과 함께 거주하게 하는 경우 실시하는 프로그램

8) Long Day Care (어린이집 운영)

- 만2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조식, 중식, 석식 및 간식 제공
- 지역 거주자는 모두 신청 및 이용(유료)이 가능하며, 50명을 정원으로 자리가 있을 경우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이용
- 어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이 성장하더라도 교사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선생님과 생활
-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도 많이 있으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생활하고 교육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

## ■ 질의응답

### Q1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에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 ▶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다면 직원을 많이 채용하겠지만 현재 센터 대부분의 재정은 Barnardos사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로 Domestic Violence Support (가정폭력 지원) 2인, Family Support & Preservation(가족회복) 1인, Temporary Accommodation(가족반영구쉼터지원) 2인, Child & Adolescent Sexual Assault Support(심리상담) 1인, Youth support(청소년 지원) 1인, Temporary Family Care(가정위탁) 6인, Kin Care Support(가족보호 프로그램) 2인, Long Day Care(어린이집 운영/아동정원 50명) 15인으로 구성

### Q2 한국은 아동보호시설 등에 일정한 면적을 구비하도록 되어있는데 호주도 정원에 따른 일정한 면적을 보유해야하는가?

- ▶ 호주 또한 정원에 따른 면적 규제가 있다. 어린이집은 복지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총 3개 방, 야외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40년 전,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설립되었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신체·건강을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사업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다양하지만 복지 센터에 집중하고 있다.

### Q3 Barnardos Auburn Children's Family Centre에서 관리하는 가구 수는?

- ▶ Family Support & Preservation (가족회복) : 1명당 18가구 관리  
Temporary Accommodation (가족 반영구쉼터 지원) : 10채의 주택 보유

### Q4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 ▶ 아동이 있는 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싸우거나 혼자 노는 모습 등 아동의 관찰된 모습을 통해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가정 폭력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가정폭력 방지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광고를 통해 가정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노출시키고 있다.

**Q5**

###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법적보호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가정위탁을 진행하는데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 ▶ 우선 아동의 일시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통해 위탁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와의 면담을 통해 임시보호자 신청 계기, 모든 가족의 지지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신청가정의 재정상태 파악 및 필수적인 신분 조회를 통해 아동범죄 기록이나 양육권 상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사회복지사가 4번의 가정방문 통해 파악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위탁가정 동의서 작성 후, 아동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센터에서 하루에 50~60불을 지급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며 관리한다. 아동을 위탁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보호, 입양과 일시보호의 차이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무엇보다 임시적인 보호자임을 중요하게 알려준다. 또한, 아동이 있는 신청가정의 경우, 가정 내 아동의 질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Q6**

### **센터 운영을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하는가? 또한, 재정적으로 계속 적자인 가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가?**

- ▶ 성금 모금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재정적 지원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Q7**

### **직원 채용 방법 및 직무만족도는 어떠한가?**

- ▶ 어린이집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고 이 외 다른 부분들에는 사회복지, 심리학 학위 소지자를 채용한다. 매월 1회 직원 면담시간, 연수 및 세미나 등 전문적 지원 등 직원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센터장은 14년째 근무 중이고, 어린이집에는 29년 동안 종사하신 분도 있으며,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학과의 인턴십이나 일자리 제공 등에도 힘쓰고 있다.

## ■ 시사점

- 위기가정 및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해 “Children’s Family Centre” 라는 테두리 내에서 심리상담, 거주지 제공 등 제반 시설 및 여건 등이 구축되어 있다.
-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인 경우, 아동과 부모의 분리에 대해 고민하는데 호주에서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가정 화합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깊었다.

## ■ 현장사진



방문기관5			
6. 16.(목)	기관명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DoCS)	
	소재지	219-241 Cleveland Street, Redfern NSW 2016	
	연락처	+61-2 9377 6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facs.nsw.gov.au/">http://www.facs.nsw.gov.au/</a>

## ■ 운영 개요

### - (비전)

- 모든 사람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잠재력을 성취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며,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 다양한 지역 파트너(정부, NGO 등)가 함께 협력 하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추진배경)

-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함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 또한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닌 아동의 안전 및 가족 복지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접근
- 학대행동, 방임행동 등 ‘행동(behaviours)’ 이라는 용어를 포함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여 정부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역할)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기관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취약한 계층의 가족과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역할 수행

### - (조직)

- 83개 지역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 Centres), 15개의 네트워크 사무소, 8개 지부로 구성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0세(임산부 포함) ~ 만 8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지원내용)

### 1) 집중서비스(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와 가정 외 보호

-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가정 내 아동 보호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보호가 아닌 가족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가족복지 관련 집중서비스 제공
- 가정 외 보호(OOHC, Out-of-Home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친인척 위탁 및 가정위탁(Family group homes), 가정기반 보호(Home-based care), 자립(Independent living) 등으로 구분

### 2) 부모교육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me, Tripple P)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부모가 신생아~청소년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
- 안전한 환경만들기(Safe and engaging environment), 긍정적으로 반응하기(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체벌대신 규칙정하기(Assertive discipline), 현실적인 기대치 정하기(Realistic expectations), 스스로를 돌보기(Parental self-care) 등 다섯가지 구성요소 포함

### 3)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 부모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지역사회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활동 참여 강화,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려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 지원

- (수행방법) 부모, 지방정부,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집단(체육 및 여가 관련 모임, 옹호 집단 등) 지역 욕구를 충족하는 광범위한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효과) 취약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제 발생 후, 아동보호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제고

## ■ 질의응답

### Q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현재 NGO단체, 학교 등을 통해 연간 23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산모 지원프로그램’, ‘부모학교 운영’,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 비중을 점점 증대할 계획이며, 학대 이후 지원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 Q2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ripple P’ 은 어떤 내용인가?

- ▶ 부모에게 아동의 분노조절, 행동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자신 돌보기, 규칙 정하기,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등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기술을 익히도록 하거나 소그룹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분노조절, 부모역할 조언, 아동행동지도 등 적극적인 참여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Q3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정부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호주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복지제도와 가정폭력·아동폭력보호법 등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따라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끼면 구청이나 시청의 예산 안에서 비영리 단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 ■ 시사점

- NSW 주정부 기관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지원을 위해 600개소 이상의 NGO 단체 등 민간 기관과 1천여 건 이상의 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운영 등 민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보다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행정체계 내 서비스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기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은 다양한 지역기관 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가정 내 노출된 위험상황 및 위기도가 높아 가정과 아동의 분리를 결정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조부모·삼촌 등 친인척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지만, 친인척이나 적절한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가정 내 위험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아동에 대해 양육자와의 분리를 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아동 치유 및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대리인으로 복지부 장관 지정은 아동보호를 위해 국가적인 책임의식과 실천적인 역할수행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족과 단체(community)가 성실한 관계로 팀을 이루어 행동하는 「Practice First」 정해두고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 ■ 현장사진



방문기관6			
6. 17.(금)	기관명	Strathfield City Council	
	소재지	65 Homebush Rd, Strathfield NSW 2135	
	연락처	+61 2 9748 9999	홈페이지 www.Strathfield.nsw.gov.au.

## ■ 운영 개요

- (Strathfield City 지역적 특성)
  - 시드니 내부 서쪽지역,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위치하며, 약 35,2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50%이상이 비영어권 나라 출신으로 그 중 한국교민이 약 3,000명가량 거주
  -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이민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기관 발달
- (Strathfield City Council 구성 및 선출방법) 인구비례대표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임기 4년)은 시의원에 의한 간접투표로 선출(현재 한국출신 옥상두 시장 재임 중)

##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아동 정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알코올 문제, 마약, 성폭력 등의 충격적인 사건·사고를 경험하거나 부적절한 돌봄 및 보호로 인해 높은 위기도를 가지고 있는 아동
-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 1900년대 이전 6개의 주가 각자의 아동복지를 위한 독자적으로 법과 서비스 집행→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규모의 통일된 접근법 수립의 필요성 대두→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 아동보호는 부모, 지역사회, 정부 등 모두에게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대원칙

- (보호대상 아동 발견 시 접근방법)

1) 개입(intervention)

- 아동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아동이 가족과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관리

2) 분리 및 일시보호(removal and placement in temporary care)

-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시, 일시적으로 아동과 가정을 분리하지만 최대한 아동과 가정을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

3) Making the child a ward of the state

- 부모 및 아동의 가정환경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법적 대리인으로 주정부(법원)에 아동돌봄 책임 부여
- 법원의 결정 이후, NGO 단체에서 가정위탁, 특수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관리 실시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 Strathfield council와 같은 지방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권한은 없으나 아동을 위협하는 학대 및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 부여
- 또한,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정부 종사자도 이에 해당

## ■ 질의응답

Q1

**한국과 달리 아동의 방임이나 학대 문제가 발생 시 신고가 잘 이루어지는데, 호주의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 ▶ 호주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또한, 호주 내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서 한국에 비해 신고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가정 및 아동을 위한 Strathfield 시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는가?**

- ▶ 호주에서는 아동학대문제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정폭력의 이차적인 희생자는 아동이다. 그러므로 우리 Strathfield 시에서는 white ribbon day를 지정하여 중·고등학교에 방문을 통한 가정폭력의 위험성 및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불가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는 절대 침묵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

## ■ 시사점

- 호주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Strathfield City Council은 지방정부로서 주정부의 예산과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드림스타트의 자원연계에 있어서 배울 점이 있어 보인다.
- 폭력의 위험성과 신고정신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white ribbon day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호주 국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국가적인 홍보를 시작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Strathfield시는 아동학대 담당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는 점이 신선하였다.

## ■ 현장사진



## 총 평

-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의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부서뿐 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인력이 아동을 위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협력하며,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지역의 속담처럼 관련 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있다.
- 개입해야 할 대상(아동)이 발생할 경우, 코디네이터와 제공자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서로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가정방문, 행정기관, 이웃, 지역사회 등을 통해 수집한 아동 및 부모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자를 통해 대상자 변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입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 개입과정 중 아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항상 아동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동 중심적인 사고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가정 내 부모의 문제로 인해 아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전에는 아동을 가정,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였지만 현재는 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적인 분리가 아닌 최대한 가족 내 문제 해결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하고, 아동이 원치 않는 경우, 가족과 분리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집 근처 이웃, 친인척 가정위탁 등 위탁을 원하는 위탁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가정과 비슷한 환경 내에서 생활하고 적합한 위탁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 표면상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사정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전략 수립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아동 관련 업무 수행자들은 아동 관련 문제 발생, 징후 발견 또는 의심이 될 경우, 무조건 관련 부서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학교 등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아동 뿐 만 아니라 부모, 교사, 일반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스스로도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반 지역 주민 또한 학대아동 및 가정폭력 발견 시, 신고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시 사 점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욕구, 개입방향 등 공유,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코디네이터이고, 수행기관 종사자는 코디네이터가 수립한 개입전략을 실행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과정에서 각자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하며, 대상자 상황,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사례관리사와 수행기관 종사자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매 순간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아동 중심의 입장에서 무엇이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우리가 아동 및 가족을 사정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뿐 만 아니라 문제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원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신고역할에 대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